

민·관합동 수질확인 검사

-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 검사와는 별도로 정수장 및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민·관 합동으로 수질확인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을 회복코자 함

1. 조사개요

- 조사근거 : 환경부 『2008년도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』
- 조사기간
 - ▷ 상반기 : 2008년 3월 ~ 6월 (채수기간 : 2008. 4. 7 ~ 4. 16)
 - ▷ 하반기 : 2008년 9월 ~ 12월 (채수기간 : 2008. 9. 17 ~ 9. 26)
- 조사대상 : 총 183개소
 - ▷ 덕산정수장 등 정수장 4개소
 - ▷ 덕산정수장계통 수도꼭지 83개소
 - ▷ 화명정수장계통 수도꼭지 65개소
 - ▷ 명장정수장계통 수도꼭지 25개소
 - ▷ 범어정수장계통 수도꼭지 1개소
 - ▷ 북구, 금정구, 해운대구, 기장군 마을상수도 4개소
- 조사참여기관
 - ▷ 보건환경연구원
 - ▷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
 - ▷ 북구, 금정구, 해운대구, 기장군 (환경위생과)
 - ▷ 민간단체(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, 부산 YWCA)

2. 조사항목 및 방법

- 조사항목
 - ▷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(55개)
 - ▷ 먹는물 수질감시항목(20개) ※ 정수장에 한함.
 - 상반기 : Vinyl Chloride등 9개 항목
 - 하반기 : Ethylendibromide등 11개 항목
- 조사방법
 - ▷ 민간단체(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, 부산 YWCA)와 공동으로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

입회토록 하여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제고

- ▷ 정수장과 수도꼭지 시료는 동일날짜에 채취하여 검사결과의 연계성 유지
- ▷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및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

3. 조사결과

- 상·하반기 전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
- 세부 결과 :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참조
 ☞ <http://www.bihe.re.kr/자료실/환경분야>

4. 대책

- 정수장, 수도꼭지, 마을상수도 기준초과
 - ▷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초과원인 분석 및 시설개선 등 조치토록 상수도사업 본부에 통보
- 정수장은 기준 이내이나 수도꼭지에서 기준 초과
 - ▷ 급수과정 단계별 추정, 초과원인 분석등 대책 강구토록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

